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9.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조정하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소요 경비의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
(안 별표 2, 측정항목2)
- 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 라.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다양한 학교체제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자체노력수요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 제2호의 개정규정(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 취소된 학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전전년도 보수총액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u>명 예 퇴 직 교 육 전 문 직 원 수</u>	1) <u>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u> 2) <u>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u>	<u>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u>
			<u>명 예 퇴 직 교 육 공 무 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u>	1) <u>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u> 2) <u>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u>	<u>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u>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Sigma(\text{학교급별} \cdot \text{규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u>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u> · <u>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u> · <u>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u>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u>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u>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u>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u>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 중학교: 학생당 651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99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	학교 수	$\Sigma\{\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비고 2의2에 따

	비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 정비	가. 기관 운영 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학교 수 × 학교당 단위비용) + (학생 수 × 학생당 단위비용) + (기준 교직원 수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 비용: 9,738천원 · 학생당 단위 비용: 63천원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552천원
	나. 지방선거 경 비	지 방 선 거 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 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 구역 면적, 도서·벽 지 소재 학교의 학 생 수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 해당 시·도의 학교 수) ÷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 시·도별 학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 족 보호대 상 학생 수, 차 상 위 계 층 학생 수, 다 문 화 가 정 및 북 한 이 탈 주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 ∑(시·도별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시·도별 전체 학생 수)} × 50% + (해당 시·도	

		민가정 학생 수	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전체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5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 10%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립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립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u>증설 교실 수</u>	<u>증설 교실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단위비용</u>
다. <u>공립</u> 통합 운영 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마.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 건축 비 부족분 지원	건축 연면적	1) (학교급별 · 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아. 학교 기숙 사 시설비	건축 연면적	학교급별 · 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m²당 건 축비
	자. 청사 신설· 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m²당 취 득비
		건축 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m²당 건 축비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 비 · 보육 료 지원	유아 수	1) $\Sigma(\text{연령별 유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 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 원 처우 수준, 교 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정하는 교 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 육역량 지원 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교 육 부 장 관 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 업비용 등을 고 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방과 후 학교 사업 비	가. 방과후학 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나. 자유 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u>돌봄 지원</u>	학급 수	학급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u>고교무상 교육 지원</u>	가. <u>고교 입학금·수업료</u>	<u>학생수</u>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
	나. <u>학교운영 지원비</u>	<u>학생수</u>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
	다. <u>교과서대금</u>	<u>학생수</u>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
9. 재정 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 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 화 지원	지원액	[(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sum$ (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7학급	193,131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12학급	-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24학급	-	-	567,322	-	688,03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790	2,740,815		901,286	1,829,225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60학급	-	-	898,950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 운영비

학급수	구분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일반고 직업과정 ^{주1)}	147,500천원	188,000천원	228,000천원
	특성화고등학교	66,000천원	84,000천원	102,000천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132,000천원	168,000천원	204,000천원

주1) 일반고 직업과정은 일반고등학교 학급 중 직업교육과정 운영 학급 수로 산정

- 교육환경 구축비

유형	단위비용
1) 세부전공 개설 학과 ^{주2)}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2) 부전공 개설 학과 ^{주2)}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3) 공동실습소	학점제로 개설한 과정 수 × 125,000천원

주2) 세부전공 및 부전공 개설 시 구축비 지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단위비용	1,000,000천원	500,000천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2,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3,50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5,0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1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300,000천원 + [(증설학급 수 - 2) × 10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8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2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500,000천원 + [(개편학급 수 - 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100,000천원 + [(개편학급 수 - 6) × 10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1,500,000천원

바.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2022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의 교육청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 · 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 · 운영하는 경우: <u>(1) 초등학교 폐쇄: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u> <u>(2) 중등학교 폐쇄:</u>

			<u>11,000,000천원이하</u> <u>로서 교육부장관이</u> <u>정하는 금액</u>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 지 않고 통합·운영 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 위비용	20,000천원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Σ 학교별 신설비·증설비 절감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3. 삭제 <2020. 2. 25.>			
4. 외부로부터의 교 육투자 유치	외부 유 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 치재원 비율 ÷ Σ 시·도별 전전 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 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 전수입 결산액 × 2.5%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 부 유치재원 비율] ÷ Σ [(시· 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 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 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 전체 시·도 수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도 수	
5. 삭제 <2020. 10. 20.>			
6. 삭제 <2020. 10. 20.>			
7. 재정집행 효율 화 지원	이 월 른 및 불용 률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 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 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 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가 목에 따른 금액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 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나목에 따른 금액	
상 반 기 예산 집행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비고

1. 측정항목 제1호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통합·운영"이란 학교 수가 줄어들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 1) 및 2)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각각 [(해당 회계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의 합산액 ÷ 해당 회계별 예산현액) × 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을 산정할 때에는 전전년도 10월 1일 이후 교부되어 이월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예산을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예산현액 규모	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5조 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조 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 원 이상인 시·도	100	-30	-60	-10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나.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예산현액 규모	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1조 원 미만인 시· 도	30	-8	-15	-30
2) 예산현액이 1조 원 이상 3조원 미만인 시·도	40	-12	-25	-40
3) 예산현액이 3조 원 이상인 시· 도	50	-15	-30	-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5. 측정항목 제7호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이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의 상반기 지출액을 그 예산과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반기 지출 목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6. 측정항목 제7호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이란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0.9 이상 1.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0.9 미만이거나 1.1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u><신설></u>	<u><신설></u>	<u><신설></u>	(현행과 같음)	<u>명 예 퇴 직 교 육 전 문 직원 수</u>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u>명 예 퇴 직 교 육 공 무 원 이 아 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u>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	나. 학급 경비	학급 수	Σ (학교급별 학급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6,869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5,109천원 · 중학교: 학급당 4,918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4,472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20,031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1,798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다. 학생 경비	학생 수	Σ (학교급별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328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595천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정하는 적용률	· <u>중학교: 학생당 687천원</u>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u>일반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u> · <u>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1,144천원</u>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u>특수학교: 학생당 1,054천원</u>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 <u>중학교: 학생당 651천원</u>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u>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u> · <u>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99천원</u>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u>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u>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나. 공학실험·전기기계·전기기계·설비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나. 공학실험·전기기계·전기기계·설비	<u>중설 교실 수</u>	<u>중설 교실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단위비용</u>
	다. <u>개발지공통합·영학교설·전비</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u>공립통합·영학교설·전비</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다. 초·중·고·대학·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다. 초·중·고·대학·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교교무상 교육지원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8. 교교무상 교육지원	가. <u>고교입학금수업료</u>	<u>학생수</u>	1) $\sum \{(\text{학생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나. <u>학교운영</u>	<u>학생수</u>	1) $\sum \{(\text{학생수} \times \text{단위비용})\}$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 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지원비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다. 교과서대금	학생수 1) $\Sigma\{(\text{학생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
8. 재정결함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재정결함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민자사업지급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민자사업지급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재정안정화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재정안정화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별표 2 비교

현행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45,555	45,895	243,797	98,719	315,616	127,446	18,168	357,266	394,517	1,294,517	22,449	423,808	-	
5학급	146,155	55,021	-	-	-	-		-	-	-		-	-	-
6학급	153,824	59,615	280,817	113,527	356,328	143,731		401,052	513,774	1,413,774		449,004	611,028	
7학급	161,924	-	-	-	-	-		-	-	-		-	-	
8학급	167,566	-	-	-	-	-		-	-	-		-	-	
12학급	-	-	334,212	-	424,176	-		473,377	803,111	1,703,111		505,633	1,224,644	
18학급	-	-	389,104	-	481,467	-		530,462	1,381,069	2,381,069		554,985	1,358,962	
24학급	-	-	444,514	-	533,785	-		589,684	1,506,869	2,506,869		593,099	1,555,068	
30학급	-	-	499,724	-	590,265	-		641,450	1,626,535	2,726,535		626,422	-	
36학급	-	-	548,114	-	644,368	-		693,437	1,757,229	2,857,229		657,913	1,829,225	
42학급	-	-	592,373	-	692,495	-		744,982	1,861,311	2,961,311		686,276	-	
48학급	-	-	640,279	-	739,378	-	801,972	1,986,158	3,086,158	716,741	-			
54학급	-	-	680,826	-	777,595	-	834,256	2,071,387	3,171,387	747,865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생략)

개정안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7학급	193,131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12학급	-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24학급	-	-	567,322	-	688,03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690	2,740,815		901,286	1,829,225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60학급	-	-	898,950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생략)

현 행

다. 국가직무교육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110,000천원	140,000천원	170,000천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단위비용	500,000천원	300,000천원	200,000천원

마. (생략)

개정안

다.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 운영비

학급수	구분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일반고 직업과정 ^{주1)}	147,500천원	188,000천원	228,000천원
	특성화고등학교	66,000천원	84,000천원	102,000천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132,000천원	168,000천원	204,000천원

주1) 일반고 직업과정은 일반고등학교 학급 중 직업교육과정 운영 학급 수로 산정

－ 교육환경 구축비

유형	단위비용
1) 세부전공 개설 학과 ^{주2)}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2) 부전공 개설 학과 ^{주2)}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3) 공동실습소	학점제로 개설한 과정 수 × 125,000천원

주2) 세부전공 및 부전공 개설 시 구축비 지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단위비용	1,000,000천원	500,000천원

마. (생략)

바.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현 행		개정안
<u><신설></u>		7. 측정항목 제8호의 교육청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u><신설></u>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별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현 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3,000,000천원	1.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이전(移轉)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1) 초등학교 폐쇄: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폐쇄: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